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7440
----------	-------

제출연월일 : 2026. 3. 12.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 및 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요건 및 조치 결정과 같이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한 자 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확대(안 제17조)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보호조치 신청 요건의 범위를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로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도 확대하여 그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보호조치 신청 시 각하 사유의 축소(안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6호)

1) 보호조치를 신청한 공익신고자 등의 신뢰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조사를 중단하면서 그 신청을 각하하던 것을, 앞으로는 조사의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하면 각하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구제절차를 신청하여 관련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각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각하 사유를 신고자 보호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좁힘.

다. 보호조치결정 내용의 확대(안 제20조제1항제4호 신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등을 제외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조치를 한 자 또는 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차별 지급된 보수 등의 지급 또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금지 외에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결정의 유형을 추가함.

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 신설 및 그 미이행 시 벌칙 마련
(안 제22조의2 및 제30조제4항 신설)

1)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등에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이행 의무의 구속력을 확보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호조치”를 “보호조치(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금지”를 “절차의 일시정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을 “변호사(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해당”을 “제1호의”로, “보호조치·보상금”을
“보호·보상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
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를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호의 공익신고를 하
기 위하여”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5호 중 “제22조”를 “제22조의2”로, “금지 신청”을 “절차
의 일시정지”로 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

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받은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익신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공익신고자등이”를 “제1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

제17조제3항 본문 중 “받은”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호조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각결정”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을 “권고결정을 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청한”을 “신청하여 그 심의가 진행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0조까지 및 제21조”를 “제20조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받았는지”를 “받았는지 여부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를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그 밖에 불이익조치”를 “불이익조치”로 하고, 같

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받았다고 인정될 때”를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하 “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로 한다.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보호조치결정, 권고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나.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3.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 제목“(불이익조치 추정)”을“(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공익신고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의2.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제24조제1항 전단 중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을 “권고결정 또는 기각결정을”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22조의2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보호조치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조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아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아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대한 불이익조치 추정에 대해서는 제2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전단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으로 한다.

②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전단 중 “제22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u>보호조치</u>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p> <p>4. ~ 7. (생략)</p> <p>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u>금지</u>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p> <p>4. 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보호</u> <u>조치(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u>----- -----.</p> <p>4. ~ 7. (현행과 같음)</p> <p>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절차의 일시정지</u> ----- -----</p> <p>4.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p>

지원) 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쟁송절차 및 보호조치·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② ~ ④ (생략)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지원) ① -----
----- 변호사(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 제1호의 -----
----- 보호·보상금 -----
3.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1호의 공익신고를 하기 위하여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의2-----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 8. (생략)

② (생략)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생략)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

절차의 일시정지-----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

----- 받은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

② 공익신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호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등이 -----

-----.

1.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신청

2.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이익조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신청

③ -----
----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

-----.

-- 제1항 및 제2항-----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생략)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생략)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생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

-----.

1. (현행과 같음)
2. -----

경우로서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현행과 같음)
4. -----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각결정-----

5. -----
-- 권고결정을 한 사항-----

6. -----
-- 신청하여 그 심의가 진행 중인 -----

7. (현행과 같음)
② -----

----- 제20조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

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
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
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
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
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
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
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
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
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
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
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
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
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

----- 불이익조치
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할 것으
로 예상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장에서 같다)----- . -

-----.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
사) ① -----

----- 받았는지 여부 또는 받
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

----- 불이익조치(제2
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
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은 경
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

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후단 신설>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신설>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 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다)을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

----- 받은 경우 또는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이하 “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생략)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③ 위원회는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보호조치결정, 권고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

--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제외한다)-----
----- . -----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삭 제>

<삭 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적인 정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것

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나.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제1호 각 목의 사유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3.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것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생략)

<신설>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생략)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정) -----

-----.

1. -----
----- 공익신고등 -----

2. (현행과 같음)

2의2.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삭제>

4. (현행과 같음)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

----- 권고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생략)

-----.

②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특별보호조치결정-----
-----.

③ (현행과 같음)